사전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

2022.12.22.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

보험업감독규정(개정)

- (개정 내용)「보험업법」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운용 한도 규제가 폐지될 예정
- 이에, 「보험업감독규정」상 관련 조문들도 개정할 필요
- (신청 사항) '23.1.1일 개정「보험업법」시행과 함께 규정 개정을 완료해야 하므로 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할 필요

2 검토 내용

- 상위법령인「보험업법」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단순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예고기간을 40일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어 10일로 단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
 - ※「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」제20조등에 따라 **금융위 규정변경은 40일** 이상 사전예고가 원칙이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, 생략·단축도 가능(동 규정 제20조제3항)

3 처리 의견

○ **사전예고 기간** : '22.12.23일~'23.1.2일 (10일간)